

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205
----------	-----

2014년 12월 18일
보 건 복 지 위 원 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14년 11월 17일, 김희걸 의원

나. 회부일자 : 2014년 11월 19일

다. 상정일자 : 제25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

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(2014년 12월 18일 상정·의결)

2. 제안설명 요지(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 김희걸)

- 상위법령의 제명 변경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중앙부처 명칭을 변경하며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

3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김태호)

가. 개요

- 상위법령의 제명 변경 및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중앙부처 명칭 변경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,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

정비하려는 것으로,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 표와 같음.

〈조항별 신·구 대비표〉

조항 구분	현행	개정안
제9조 제1항 중	국토해양부장관이	국토교통부장관이
제10조 제2항 중	「사회복지법인 재무·회계」	「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·회계 규칙」
제11조 제2항 중	적합하도록	맞도록
	비치하여야	보관하여야

나. 개정조례안에 대한 타당성 검토

- 우선, 안 제9조 제1항은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중앙부처의 명칭 변경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이며, 안 제10조 제2항의 개정내용은 지난 2012년 8월에 개정된 상위법령의 제명 변경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인바, 동 개정 내용은 그 필요성이 인정됨.
- 다음으로, 안 제11조 제2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, 이는 어려운 용어를 쉬운 말로 풀어쓰고 간결하게 다듬어 자치법규에 대하여 시민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므로, 그 타당성이 크다고 생각함.
- 다만, 법제처(2011)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」에서는 일본식 한자어에 해당하는 “비치하다” 는 “갖춰두다” 또는 “갖춰놓다”, “갖추어 두다” “준비하다” 와 같이 정비할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고,

- 또한, “적합하다” 의 경우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및 국립국어원 순화어 권장 사항에 따르면 “알맞은” 으로 순화하거나 또는 현행대로 “적합” 을 모두 쓸 수 있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음.
- 덧붙여, 개정안에서 제시한 제10조 제2항 본문 내용이 다음 표와 같이 기록되어 있는데, 여기서 「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」는 「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」을 단순히 오기한 것으로 파악되는바, 이 개정안이 원안대로 의결 할 경우, 오기된 부분은 의안의 정리를 통하여 교정보완 될 필요가 있음.

<개정안 본문 관련 내용> 제10조제2항중 “「사회복지법인 재무·회계」”를 “「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·회계 규칙」”으로 한다.

- 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- 5. 토론요지 : 없음
- 6. 소위원회의 심사보고 요지 : 구성하지 않았음
- 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 (출석위원 전원 찬성)
- 8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- 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 제1항 중 “국토해양부장관이”를 “국토교통부장관이”로 한다.

제10조 제2항 중 “「사회복지법인 재무·회계 규칙」”을 “「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·회계 규칙」”으로 한다.

제11조 제2항 중 “적합하도록”을 “맞도록”으로 하고 “비치하여야”를 “보관하여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9조(임대아파트의 임대료 등)</p> <p>① 시장은 청소년시설에 포함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입주자에 대하여 <u>국토해양부장관이</u> 고시하는 영구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부과·징수한다.</p>	<p>제9조(임대아파트의 임대료 등)</p> <p>① ----- ----- ----- <u>국토교통부장관이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10조(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)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를 준용하고, 예산·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「<u>사회복지법인 재무·회계 규칙</u>」을 준용하게 할 수 있다.</p>	<p>제10조(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「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·회계 규칙」</u> ----- -----.</p>
<p>제11조(운영규정)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청소년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알려진 기준에 <u>적합하도록</u> 운영규정을 작성하고 <u>비치하여야</u> 한다.</p>	<p>제11조(운영규정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맞도록</u> ----- ----- <u>보관하여야</u> ---.</p>